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67호, 2024. 12.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021. 1. 5.>

- 1. 삭제 < 2008. 6. 20.>
- 2. "송신설비"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 4. "송신장치"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 5. "송신안테나계"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 6. "안테나공급전력"이란 안테나의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 7. "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이란 안테나공급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이득(相對 利得)을 곱한 것을 말한다.
- 8. "중파방송"이란 300킬로헤르츠(씨z)부터 3메가헤르츠(씨z)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 9. "단파방송"이란 3메가헤르츠(씨bz)부터 30메가헤르츠(씨bz)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 10. "초단파방송"이란 30메가헤르츠(씨z)부터 300메가헤르츠(씨z)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11호 및 제12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 11. "텔레비전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 12. "데이터방송"이란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 13. "방송구역"이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전계강도(電界强度)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 14. "블랭킷에어리어"란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중파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 15. "연주소"란 방송사항의 제작 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 16. "무선측위(無線測位)"란 전파의 전파특성(傳播特性)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17. "무선항행"이란 항행을 위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한다).
- 18. "무선탐지"란 무선항행 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
- 19. "무선방향탐지"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 20. "레이다"란 결정하려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 연합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 12. 9., 2017. 12. 12.>
 - 1. 주파수분배・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 2.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 경제적 지표
 - 3. 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 4.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 4의2.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이용 및 운영실태
 - 5. 법 제8조에 따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 1. 해당 시설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
 -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수입・제조・판매한 자와 이용자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파자원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2.>
-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 3.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 4.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 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3.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 1.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자공학·전파공학 등 주파수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주파수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에 있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④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수 있다.<신설 2015. 12. 31.>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7, 26.>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2. 31.>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1.>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31.>

[본조신설 2013. 3. 23.]

-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12.>
 -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손실의 내용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 1. 삭제 < 2012. 11. 2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삭제 < 2012. 11. 23.>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과 법 제6조의 2에 따라 새로 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신규이용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 ⑤ 삭제<2017. 12. 12.>
- 제9조(징수금의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개정 2009. 8. 18.,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①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12. 31.>
 -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금액의 배분은 해당 주파수할당 대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각각 편입된 금액규모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0. 12. 31.>

[제목개정 2010. 12. 31.]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방송통신기자재의 내용연수와 주파수분배의 변경을 위한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이나 개조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 1. 방송통신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원
 - 2.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 또는 개조를 통하여 다른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선설비의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 2.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3.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의 지원
- 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 3.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종료와 관련된 홍보 및 이용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③ 센터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제조·판매한 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 12. 9.,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 할당방법 및 시기
 - 3. 주파수할당 대가
 - 4. 주파수 이용기간
 -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 6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의 할당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할당대상 주파수"는 "할당대상 위성주파수등"으로 본다.<신설 2016. 6. 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1.>
-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3. 주파수이용계획서
 - 4.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10. 12. 31., 2013.
 - 3. 23., 2017. 7.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파수할당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0. 12. 31.]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2021. 12. 28., 2024. 3. 26.>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 2. 제1호에 따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및 기술방식
-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0., 2020. 6. 23.>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2018. 4. 10.>
- ④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0.>

[제목개정 2010. 12. 31.]

-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 2.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 3.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본조신설 2010. 12. 31.]

- **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 12. 31.>
 -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경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의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3.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9., 2013. 3. 23., 2017. 7. 26.>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2. 31.>
 -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 2.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 3.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9., 2013. 3. 23., 2017. 7. 26.>
 - 1.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계약서 사본
 - 2. 법인의 정관
 -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 6. 이용자 보호대책
 - 7.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 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8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법인의 정관
 -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3. 주파수이용계획서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 장열람(발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6. 21, 2017. 7. 26.>
 - 1. 용도
 - 2.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위성주파수의 경우에는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 3. 안테나공급전력
 - 4. 안테나의 형식 구성 및 이득
 - 5. 사용지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사용승인 변경내역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 ③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반납하려는 자는 무선국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본조신설 2016. 6. 21.]

-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 2. 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 3. 통신망 구축・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 ㆍ 경제적 파급 효과
 - 6. 통신망 구축ㆍ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 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 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1.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씨比)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메가헤르츠(씨比) 이상인 경우
 - 2.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Mbz) 이상이고 3기가헤르츠(Mbz)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0메가헤르츠(Mbz)를 초과하는 경우
 - 3. 주파수대역이 3기가헤르츠(에z) 이상이고 30기가헤르츠(에z)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30메가헤르츠(Mbz)를 초과하는 경우
 - 4. 주파수대역이 30기가헤르츠(에z) 이상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50메가헤르츠(Mbz)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21.]
- 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 2. 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 3. 별표 3의2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적정성 조사・분석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 ②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및 분석
 - 2. 법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한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의 조사・분석
 - 3.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 등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1.]

-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2. 12. 27.>
 -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 2. 「전기통신사업법」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의하여 이용하는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전문개정 2010. 12. 31.]
-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17. 7. 26., 2020. 6. 30.>
 - 1. 해당 분기 중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
 - 2. 매 분기 말일 기준의 가입자의 수
 - 3.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현역병[같은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같은 항 제2호중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하도록 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환복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수
 - 4.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요금의 연체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의 수 [전문개정 2010. 12. 31.]
-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
 - 1. 「군용전기통신법」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 2.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경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 3. 주한 외국공관이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행사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이 그 행사기간 중에 개설하는 무선국
 -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중 같은 협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약정의 적용을 받는 무선국
 - 6.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위하여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전문개정 2010. 12. 31.]
-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 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3., 2016. 6. 21., 2024. 3. 26.>
 -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 3.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무선기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0메가헤르츠(MHz) 이상 4,820메가헤르츠(MHz) 이하 또는 28.9기가헤르츠 (GHz) 이상 29.5기가헤르츠(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개정 2012. 11. 23.,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1.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 가. 이동통신
 - 나. 휴대인터넷
 - 다. 위치기반서비스
 - 라. 무선데이터통신
 - 마.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 바. 그 밖에 국가간 · 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 2.「방송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 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 1. 위성방송보조국
- 2. 지하 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

[전문개정 2010. 12. 31.]

-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1. 표준전계발생기ㆍ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기기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및 주파수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전문개정 2010. 12. 31.]

-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 1. 기지국
 - 2. 육상이동국
 - 3. 간이무선국

[전문개정 2010. 12. 31.]

-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한다.
 - 1.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2.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 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6. 21,, 2017. 12, 12,>
- 1.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려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2)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의 임면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 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2.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50와트) 이하일 것
- 3.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 ③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신청인이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 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0. 12. 31.]

제28조(업무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 6.

21., 2021. 1. 5.>

-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 2. 방송업무
 -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 하는 무선통신업무
- 3.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 통신업무
-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6.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통신업무
 - 가. 무선항행업무: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 1) 해상무선항행업무: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2)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 3) 무선표지업무: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 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무선국이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 나. 무선탐지업무: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
- 8. 기상원조업무: 기상(氣象) 및 수상(水象)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 9.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기술,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 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 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 10.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하는 업무
- 11. 무선조정이동업무: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 또는 무선조정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 12.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 13. 비상통신업무: 지진・태풍・홍수・해일・눈피해[雪害]・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 14.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그 밖의 물체를 이용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 15.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 16. 육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육상이동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 17. 해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선박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선박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선박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18. 항공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항공기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항공기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항공기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 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19.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 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 간 또는 우주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 20.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 21.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우주무선통신업무
- 22.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하는 천문업무
- 23. 삭제 < 2016. 6. 21.>
- 24. 삭제 < 2016. 6. 21.>
- 25. 삭제 < 2016. 6. 21.>
- 26. 삭제 < 2016. 6. 21.>
- 27. 삭제 < 2016. 6. 21.>
- 28. 삭제 < 2016. 6. 21.>
- 29. 삭제 < 2016. 6. 21.>
- 30. 삭제 < 2016. 6. 21.>
- 31. 삭제 < 2016. 6. 2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의 업무 외에 무선국의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6. 21,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 6. 21., 2017. 7. 26., 2017. 12. 12.>
-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 2. 방송국
 -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 나. 위성방송국: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 라. 위성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 3.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 4.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 5.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 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船團)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저전력의 무선국
- 6. 구명부기국: 구명정·구명복, 그 밖의 구명설비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 또는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
- 7.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 8. 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육상이동국·선박국·선상통신국·구명부기국 및 항공기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9.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 10.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 11.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 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 12. 육상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기지국·해안국·항공국 및 이동중 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 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 13.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 나.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
 - 다. 자동차에 개설하여 육상의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 14.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15.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 16.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 17.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
- 18.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19.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 20.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를 하는 무선국
- 21. 무선측위국: 무선측위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표지국·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 및 무선방향탐지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22.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23.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 24.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 및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 25. 무선조정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여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 26. 무선조정중계국: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중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한 무선국
 - 나. 이동체에 개설하여 이동 중 또는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 28.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 29.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 30. 일반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지구국
- 31. 기지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3. 항공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4. 육상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기지지구국·해안지구국 및 항공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 35. 육상이동지구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육상이 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6.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7.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8. 이동지구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육상이동지구국·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 39.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 40.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 41.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 42.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 43.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 외에 무선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6. 21.,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2. 31.]

-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①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 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 ②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단파방송·초단파방송·텔레비전방송·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1조(허가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3. 6. 7.>
 -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 2.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에 따라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 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6. 21, 2017. 7. 26.>
 - 1.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 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 2.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 3.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지구국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 4. 사용지역·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소규모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으로서 같은 무선국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 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 5. 4., 2010. 11. 2., 2013. 3. 23., 2014. 8. 27., 2014. 12. 3., 2017. 7. 26.>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2.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 3. 법인의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 다)
 - 4.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 5.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 6. 「어선법」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 7. 「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신설 2010. 12. 31,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1. 무선국의 목적
 -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 3.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5.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간이무선국이 같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안테나공급전력
- 7. 안테나의 형식 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 8. 운용허용시간
- 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 10. 무선기기의 대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무선기기는 제외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7, 2017. 7. 26.>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32조 삭제 <2010. 12. 31.>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 12. 31., 2014. 12. 3., 2016. 6. 21.>
-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 4. 무선국의 목적
-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7. 허가의 유효기간
-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9.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아마추어국 등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가 가능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 10. 안테나공급전력
- 11.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 12. 운용허용시간
-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16. 무선기기의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무선기기의 명칭만 해당한다)
- ② 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오손·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 ④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 중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변경 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 2017. 7. 26.>
- ⑤ 시설자가 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증을 변경하여 발급하여 야 한다.<신설 2014, 12, 3,, 2017, 7, 26.>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
- 2. 해안국
- 3. 항공국
-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 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9., 2010. 7. 26., 2010. 12. 31., 2014. 12. 3., 2016. 6. 21., 2016. 6. 30., 2017. 3. 29., 2018. 12. 18., 2022. 12. 27., 2023. 6. 7.>

-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 2. 이동국・육상국・육상이동국・기지국・이동중계국・선박국[「선박안전법」,「어선법」 또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선상통신국・무선표지국・무선측위국・우주국・일반지구국・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육상지구국・이동지구국・기지지구국・육상이동지구국・아마추어국・간이무선국・항공국・고정국・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비상국・기상원조국・항공기지구국・무선조정국・무선조정이동국・무선조정중계국・전파천문국・선박지구국・항공기국[「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 5년

2의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한다)

- 3.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무선국: 3년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1항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0. 7. 26,, 2013. 3. 23,, 2017. 7. 26,, 2018. 12. 18.>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 2017. 7. 26., 2021. 1. 5.> [제목개정 2018. 12. 18.]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 1. 제23조제1호 및 제5호의 무선국: 10년
- 2. 제23조제3호 및 제6호의 무선국: 5년
- 3. 제23조제2호 및 제4호의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인정하는 기간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승인 절차와 제39조에 따른 재승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 2017. 7. 26., 2021. 1. 5.>
- 제38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27.>
 - ③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 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27., 2017. 7. 26.>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법인의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6. 6. 21., 2017. 7. 26.>
 - 1.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3. 안테나공급전력
 - 4. 운용허용시간
 -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 6. 안테나의 형식 구성 및 이득
 -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 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개설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 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성방송보조국 또는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을 둘 이상 동시에 개설신 고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7,>
- 1. 제31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常置場所,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송신장치의 증설
- 5. 무선기기의 대치

[본조신설 2010. 12. 31.]

[제목개정 2014. 12. 3.]

-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7.>
 - 1.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 2. 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신고증명서"로,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은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허가변경명세서"는 "신고변경명세서"로 본다.<개정 2014. 12. 3.>

[본조신설 2010. 12. 31.]

-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2024. 3. 26.>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 3. 삭제 < 2024. 3.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7., 2017. 7. 26., 2024. 3. 26.>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 3.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 ② 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3.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4. 3. 26.>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 3.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 **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42조의2(표본검사)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8. 27., 2022. 12. 27.>
 - ③ 법 제24조제7항에서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 9. 9., 2010. 7. 26., 2010. 12. 31., 2013. 3. 23., 2017. 3. 29., 2017. 7. 26.>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 가. 의무선박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
 - 나. 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에 따른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 다. 실험국
 - 라. 실용화시험국
- 2.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 다.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항공기국
- 3.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 4.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08. 12. 9., 2010. 12. 31., 2014. 8. 27., 2016. 6. 30., 2024. 3. 26.>
-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 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 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무선국 중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무선국(이하 이 호에서 "기준무선국"이라 한다)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기준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다.
- 5.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다시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45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 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 정 2010, 12, 31, 2022, 1, 11.>
 -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개월 이내
 - 2.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3.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선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자의 편익을 위하여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제44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5년인 무선국일 것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2개 이상의 무선국(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검 사관할구역이 동일한 무선국만 해당한다)일 것
- 2. 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4. 12. 3., 2016. 6. 21., 2016. 6. 30., 2017. 7. 26.>
- 1. 성능검사: 안테나공급전력・주파수・불요발사(不要發射)・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等價等方輻射電力)・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 2. 대조검사: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 ④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0.>
-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8. 27., 2014. 12. 3., 2016. 6. 30., 2017. 7. 26., 2020. 12. 1.>
- 1. 표본추출비율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 표본검사의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
- 2. 무선국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 3.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27., 2016. 6. 30.>
- ⑦ 법 제24조제4항 ·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10. 12. 31., 2014. 8. 27., 2014. 12. 3., 2016. 6. 30.>
- ⑧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14. 12. 3., 2016. 6. 30., 2017. 7. 26., 2020. 12. 1.>
- 1.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⑨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 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4. 12. 3., 2016. 6. 30.>
- 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12. 3., 2016. 6. 30., 2017. 7. 26.>

[제목개정 2014. 8. 27.]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 국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2020. 6. 23.>

-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 2.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 나.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운용하는 무선국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
-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 7. 소규모의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
-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 가.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나.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다.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라.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 마. 무선측위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 2.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서 회로의 변경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 3. 그 밖에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등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본조신설 2010. 12. 31.] [제목개정 2016. 6. 21.]

-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30.>
 -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 1.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국
 -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제48조 삭제 <2010. 12. 31.>

-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 1.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하는 통신
 - 2. 기상의 조회 또는 시각(時刻)의 조합을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항공기 국 상호 간의 통신
 - 3. 의료통보(항행 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의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를 말한다)에 관한 통신
 -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 통보(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한 경우에 구조나 탐색상의 필요로 국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수집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에 관한 통보로서 해당 행정기관과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간에 송·수신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통신
 - 5. 방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통신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선박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해안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 7. 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항공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 8. 항공국에서 항공기국에 보내는 통신, 그 밖에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으로서 시급한 것을 송신하기 위하여 하는 다른 항공국과의 통신(다른 전기통신계통에 따라 해당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 9. 항공무선전화 통신망을 형성하는 항공국 상호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 가. 항공기국에서 발신하는 통보로서 해당 통신망 내의 다른 항공국에 보내는 것의 중계
 - 나. 해당 통신망 내에서의 통신의 유효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
- 10.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통신
 - 나.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
 - 다.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
- 11. 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육상이동업무 또는 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 12. 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이동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항공이동업무 또는 육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국과 선박국 간 또는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항만 내에서의 선박의 교통, 해상 유류오염발생, 항만 내의 정리, 그 밖의 항만 내에서의 단속, 해항검역사무에 관한 통신
-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공관제탑의 항공국과 해당 공항 내를 이동하는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간에 하는 공항의 교통정리, 단속・검역사무, 그 밖에 공항 내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통신
- 15. 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 간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어업통신 또는 어로의 지도 ㆍ 감독에 관한 통신
- 16. 해상보안을 위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그 밖의 선박국, 항공기국 또는 무선측위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상보안업무에 관한 시급한 통신
- 17. 치안유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무선국 상호 간에 하는 치안유지에 관한 시급한 통신
- 18.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
-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51조(폐지·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려고 할 때
 - 2. 입항으로 폐국하려고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려고 할 때
 - 3. 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 외에 폐국하려고 할 때
 - ② 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해안국의 통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
 - 2.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
 - 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

-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수입・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 1.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
 - 2.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 3.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
 - 4.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 ② 제조 수입 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
 - 2.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수입・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신고 및 제조・수입・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

-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24. 7. 23.]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방송국의 개설허가신청 시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터널 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방송국별로 설치장소・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6. 21., 2020. 12.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3. 23.]

-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 2. 연주소 시설의 보유 여부.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방송국의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인지 여부
 - 4.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보유 여부
 - 5.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인 경우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50킬로와트 이하인지 여부.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1.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 내의 가구 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 내 가구 수의 0.35퍼센트 이하일 것
 -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 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안테나공급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3.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송신안테나 상호 간의 전자적 결합 등에 따라 방송의 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 한도에서 그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 해당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 1.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방송하려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려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 2.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려는 지역 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 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제56조제1항제3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 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018. 12. 18.>
 - 1. 안테나공급전력은 10와트 이하일 것
 - 1의2. 허가받은 안테나공급전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출력제한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출력제한장치는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그 밖에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 높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58조(방송구역)** ① 방송국(위성방송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방송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 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따라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 내의 총 가구 수・방송청취예상 세대 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①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③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 2. 수신장애의 제거방안
 - 3. 해당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 2. 위성사업계획서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 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지정이 가능할 것
 -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위성망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 가.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는 경우
 - 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 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6. 6. 21.]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승인)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임대・임차 계약서(임대・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 2. 해당 법인의 정관
 -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 6. 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1. 양도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임대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26.>

-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 2.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 3. 신청인의 재정적 능력
- 4. 신청인의 기술적 능력
- 5.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6. 21.]

-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제6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26.>

-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 2.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6. 6. 21.]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임대・임차 계약서(임대・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 2. 해당 법인의 정관
-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4. 위성사업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 26.>
- 1. 우주국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 2. 위성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 3.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6. 6. 21.]

-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제12조제1항제3호의 주파수이용계획서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위성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수명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되기 5년 이전에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후속 인공위성의 위성 궤도 및 주파수
 - 2. 후속 인공위성의 제작 일정 및 발사 예정일
 - 3. 후속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
 - 4. 위성사업계획

[본조신설 2016. 6. 21.]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제목개정 2016. 6. 21.]

-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08. 12. 9., 2010. 12. 31., 2014. 8. 27.,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2020. 12. 1., 2022. 1. 11.>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 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하려는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는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시기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
- ⑤ 제1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제4항에 따라 연장을 승인한 보고 시기를 포함한다)를 계산하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20. 12. 1.>

[제목개정 2016. 6. 21.]

-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2016. 6. 30., 2017. 7. 26.>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2조에 따른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
 -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목개정 2016. 6. 21.]

-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망을 보호하고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 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압 또는 전류에 의한 전자파에너지가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 나.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력 등의 전자파에너지가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 2.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전자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가. 공간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 및 전원선·신호선 등에 의한 전자파에너지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나. 정전기 등 순간적인 전자파에너지의 변동과 정격전압 변화 등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 설비
-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삭제<2010. 12. 31.>
- ⑤ 삭제 < 2010. 12. 31.>
- ⑥ 삭제<2010. 12. 31.>
- ⑦ 삭제 < 2010. 12. 31.>
- ⑧ 삭제<2010. 12. 31.>
- ⑨ 삭제 < 2010. 12. 31.>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립·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도시지역에 설치 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건물・도로・나대지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 ②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운용하는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개정 2016. 6. 21., 2020. 6. 23.>
-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 3. 23., 2017. 7. 26.>
- 1.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 3. 건물 · 옥상 · 철탑 등의 안전 여부
- 4. 전자파강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초과 여부(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만 해당한다)
- 5. 지하・터널 또는 건물 내의 설치 가능 여부(무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명령만 해당한다)
- 6. 그 밖에 무선설비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
-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3. 무선설비의 설치기간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용명령등의 요건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不要波)의 탐지
 - 2. 삭제 < 2024. 3. 29.>
 - 2의2. 삭제 < 2024. 3. 29.>
 -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 4. 전파의 이동감시
 - 5. 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 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09. 11. 2., 2010. 12. 31.,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021. 1. 5.>
 - 1. 무선방위측정장치(無線方位測定裝置)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가.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통신용·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건물(목조·석조·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 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 라. 철조·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연통·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 마. 철도 및 궤도
 - 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가스관·전력용케이블·통신용 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건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방위・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건축물등 건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08. 6. 20.,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08. 6. 20.,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08. 6. 20.]
-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3조 삭제 <2010. 12. 31.>

-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씨z)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2., 2017. 7. 26., 2021. 1. 5.>
 -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 3.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 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여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 적에 이용하는 것]
-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 1.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설비"라 한다)는 해당 설비로부터 3미터에서의 전계강도가 500마이 크로볼트(μV/m)를 초과하는 설비. 다만, 해당 설비의 주파수가 450킬로헤르츠(Μz) 미만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계강도를 초과하는 설비로 한다.
 - 2. 유도식 무선전신·무선전화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선로로부터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파이 (π)로 나눈 거리에서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5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
 -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0.>
 - 1. 9킬로헤르츠(씨)이상 30메가헤르츠(씨)까지의 범위의 주파수(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실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 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은 제외한다.
 - ③ 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khz)부터 250킬로헤르츠(khz)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제74조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 2.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 신청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수 있다.
 - 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해당 설비의 허가증 사본
 - 2. 새로 설치하려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 3.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내주어야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0. 12. 31., 2014. 12. 3., 2017. 7. 26.>
 - 1. 운용목적
 - 2. 설치장소

- 3. 기기형식·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차폐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제외한다.
- 4. 전파형식 및 주파수
- 5. 고주파 출력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 ②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7.>
-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 3호 및 제5항제2호·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4. 8. 27., 2014. 12. 3., 2016. 6. 30., 2022. 12. 27.>
- ④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12. 27, 2024. 12. 17.>
- 1. 창문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 [제목개정 2022. 12. 27.]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 12. 31.>

-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 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3.>
 - 1. 측정 ·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3.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4. 7. 23.>
- 1.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
- 2. 「국가표준기본법」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7. 23.>
- 1. 상호 또는 성명
-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 3. 기자재의 고유번호
-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 5. 기자재의 외관 사진
- 6. 기자재에 적용된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
-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3.>
- 1. 적합등록을 한 자: 적합등록을 한 날
- 2.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을 한 자: 자기적합확인을 한 날
- 3.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자: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날

[본조신설 2010. 12. 31.]

[제목개정 2024. 7. 23.]

-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8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3.>
 - ②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의3제 4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4. 7.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7. 23.>

[본조신설 2010. 12. 31.]

[제목개정 2024. 7. 23.]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 2. 기자재 명칭
- 3. 기자재의 제조시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 5.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 6. 기자재의 모델명 및 고유번호
- ②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를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하려는 자는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한다.<신설 2024. 7. 23.>
- ③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2024. 7. 23.>

[본조신설 2016. 6. 21.]

[종전 제77조의5는 제77조의6으로 이동 <2016. 6. 21.>]

- 제77조의6(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2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법 제58조의2제10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 6. 21., 2024. 7. 23.>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6은 제77조의7로 이동 <2016. 6. 21.>]

-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 6. 21.>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7은 제77조의8로 이동 <2016. 6. 21.>]

-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1. 법 제58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8은 제77조의9로 이동 <2016. 6. 21.>]

-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6. 6. 21., 2017. 7. 26.>
 - 1. 유선 분야

- 2. 무선 분야
- 3. 전자파적합성 분야
- 4. 전자파 강도 분야
- 5. 전자파흡수율 분야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 10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9는 제77조의10으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① 법 제5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제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를 위한 기준을 갖춘 기구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0은 제77조의11로 이동 <2016. 6. 21.>]

-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6. 21.>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16. 6. 21,, 2024. 7. 23.>
 - 1.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별표 14의2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설비에 한정한다)의 성능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해당 설비의 사용빈도 ·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기마다 실시
 - 2. 제1호 외의 사항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 ③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신설 2016. 6. 21.>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7. 23.>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1은 제77조의12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 1. 시험 관련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 2. 시험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시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 비치할 것
- 4.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적합등록을 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 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ㆍ시행할 것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2는 제77조의13으로 이동 <2016. 6. 21.>]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적합성평가의 효력에 관한 사항
- 2. 적합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 3.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12. 31.]

[제77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3은 제77조의14로 이동 <2016. 6. 21.>]

-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취소인 경우: 4개월의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
 - 2.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 면제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종전 제77조의14는 제77조의15로 이동 <2024. 7. 23.>]

-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개정 2017. 7. 26.>
 - 1.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점과 그 시점이 경과된 후 사용하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 종료일
 - 3. 센터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해당 기자재 및 기자재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 포장 시 표시사항이 기재된 이용자안내문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제77조의14에서 이동 <2024. 7. 23.>]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장 전파의 진흥

제78조 삭제 <2010. 7. 26.>

제79조 삭제 <2010. 7. 26.>

제80조 삭제 <2010. 7. 26.>

제81조 삭제 <2010. 7. 26.>

제82조 삭제 <2010. 7. 26.>

제83조 삭제 <2010. 7. 26.>

제84조 삭제 <2010. 7. 26.>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12. 12.>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파를 이용한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기술
- 2. 전파 관리 및 이용환경에 관한 기술
- 3. 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기술
- ②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9.,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 2016. 6. 21., 2017. 12. 12.>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회원 상호 간의 협력활동
- 2.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조사·홍보 및 발간사업
- 2의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파수 또는 기술방식 등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
 - 나. 주파수 또는 새로운 기술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
- 2의3. 전파방송산업의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전파방송기술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 나. 전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기자재, 방송장비 등의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
 - 다. 전파방송기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 3. 전파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 3의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 4. 전파이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 6.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 6의2.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 6의3. 삭제 < 2016. 6. 21.>
- 7.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 7. 26., 2010. 12. 31., 2016. 6. 21., 2022. 2. 28.>

- 1.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통신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 3. 제9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7에 해당하는 무선국
-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개설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무선국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 5. 홍수의 예보 · 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 6.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 7. 농어촌 지역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지구국
- 8.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에z) 이상 29.5기가헤르츠(에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0. 12. 31.>
- 1. 법 제6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 2. 법 제6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 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24. 3. 26.>

-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 3.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 ②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7. 1. 24.>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 다.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718메가헤르츠(씨z) 이상 728메가헤르츠 이하 및 773메가헤르츠 이상 783메가헤르츠 이하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무선국
- 2. 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 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11과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전파사용료는 산정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31.>
-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①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 12, 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7.>
 - ⑤ 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7.>
-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 3. 29.>
-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①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②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 6. 21.>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14. 12. 3.]

제94조 삭제 <2016. 6. 21.>

-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1만2천원
 - 2.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 3. 재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본조신설 2014. 12. 3.]

-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 · 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 ②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통신의 상대방·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호출부호·호출명칭·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개정 2010. 12. 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 · 제4항 · 제5항 · 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8. 27., 2016. 6. 21.>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개정 2010. 12. 31,, 2016. 6. 21.>
 - 1.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증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변경검사 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해당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 3. 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 중 최대안테나공급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 검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2014. 8. 27, 2016. 6. 21.>
 - 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 트 이하의 것은 별표 13의 무선국란의 종별란 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 2. 제1호 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 2항제1호가목 · 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개정 2008. 6. 20., 2010. 12. 31., 2014. 8. 27., 2016. 6. 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6. 21.]

[종전 제97조의2는 제97조의3으로 이동 <2016. 6. 21.>]

-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 1. 적합성평가의 신청
 - 2.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
 - 3.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갱신 신청 [전문개정 2024. 7. 23.]
-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
- 제98조의2(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24. 3. 26.]

-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①법 제70조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받으려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7. 26., 2011. 3. 29., 2012. 11. 23., 2013. 3. 23., 2017. 7. 26.>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2. 접수기간 안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전부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
 - 4. 검정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40퍼센트를 감경한다.<개정 2022. 12. 27.>
-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중입출력송수신설비를 사용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하여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송수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 2.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중 고주파 출력이 가장 큰 하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 ③ 제69조제1항제1호 ·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개정 2017. 12. 12., 2020. 6. 23.>
- 1. 고정국
- 2. 기지국
- 3. 이동중계국
- 4. 방송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신설 2020. 6. 23.>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4.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 5. 기간통신사업자
- 6. 방송사업자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별표 14의5의 감경기준에 따라 제9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한다.<신설 2024. 3. 26.>
- 제102조(납부방법) ①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5조, 제97조의2, 제97조의3,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 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2. 3., 2024. 3. 26.>
 - ②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진흥원에 내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로 미리 내야 한다.
 - ③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 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04조(합격기준)**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10. 7. 26.>
 - 1.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 무선통신술과목[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제외한다]은 해당 자격 종목의 매 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종별 40점 이상, 전 종별 평균 60점 이상
-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①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0. 7. 26., 2016. 6. 21.>
 -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 중 통신보안과목, 해상무선통신사의 영어과목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개정 2010. 7. 26.>
 - ③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술과목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0. 7. 26.>
 - ④ 항공무선통신사·해상무선통신사·육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7. 26., 2013. 3. 23., 2017. 7. 26.>
-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①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 2. 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2021. 1. 5.>
 -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의 반명함판) 1장
 - 2.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과목의 일부 면제자만 해당한다)

제110조 삭제 <2016. 6. 21.>

-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 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0. 12. 31.]

-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 1.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제목개정 2010. 12. 31.]

-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 9. 22.>
-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2. 11. 23.,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2.>
 -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증명서(「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자

- 2. 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 3.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하는 경우
 - 가. 연락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 나. 조난통신 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
- 4.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는 경우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2.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 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본조신설 2016. 6. 21.]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3.,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1. 해안국: 별표 18
- 2. 지구국: 별표 19
- 3. 선박국
 - 가.「선박안전법」제29조제1항 및「어선법」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별표 20
 - 나. 가목 외의 선박국으로서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 별표 2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국: 별표 21
- 4. 방송국: 별표 22
- 5. 항공기국: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1명 배치
- 6. 그 밖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7. 삭제 < 2016. 6. 2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6. 6. 21.]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 있는 방송통 신기자재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 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시정・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 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 1.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기자재가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3. 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5.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수입한 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시험을 한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자재를 수입한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유,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열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종전 제117조의2는 제117조의3으로 이동 <2017. 12. 12.>]

-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31.]

[제117조의2에서 이동 <2017. 12. 12.>]

제8장 보칙

-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 · 제2항, 제58조의7제2항 · 제3항, 제72조제2항 · 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2016. 6. 21.>
 - 1.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 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3
 - 1의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4
 - 1의3.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5
 - 1의4.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6
 - 2.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 3.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4
 - 4. 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5
 - 5.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6

[전문개정 2010. 12. 31.]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법제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7. 7. 26.>

- 제120조(과징금의 부과・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3.>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 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12. 12.>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삭제<2021, 9, 24.>
 -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
 -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의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23.]

-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 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1. 23., 2013. 3. 23., 2014. 12. 3., 2015. 9. 22.,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2020. 12. 1., 2024. 3. 29., 2024. 7. 23.>
 - 1. 법 제5조에 따른 주파수의 국제등록
 - 1의2. 법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6제3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여부 심사,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전파혼신 분석 1의3. 제37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 1의4.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 차단장치에 대한 제조・수입・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 1의5. 법 제44조의2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 1의6.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 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1의7.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중 다음 각 목에 대한 기술기준의 고시
 - 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 나.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 다.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 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
 - 마. 전파응용설비
 - 바.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 출력 측정방법 및 산출방법
 - 1의8. 법 제4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법제처 51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의 고시
- 2의2.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의 고시
-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의 고시
- 4.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조사 및 전자파 저감・차폐를 위한 조치 권고
- 5. 삭제 < 2024. 3. 29.>
-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 외한다)
-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고시
- 7의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7의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8.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제6항·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 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 9.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ㆍ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11.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시험업무의 폐지, 양수·합병의 승인 및 전문심사 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 12.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13. 법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13의2.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14. 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
- 15.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 및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16.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파연구에 관한 사항
-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8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7의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 18. 법 제7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 19. 법 제90조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제5호의7 및 제9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20.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에 관한 고시
- 21.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 22.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관 대상 서류에 관한 고시
- 23. 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변경 등에 관한 고시
- 24.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5. 제77조의14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고시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6. 6. 21., 2017. 7. 26., 2018. 9. 28., 2020. 12. 1., 2024. 3. 29., 2024. 7. 23.>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항
- 2. 법 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변경허가·개설신고·변경 신고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와 이 영 제3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법제처 52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법 제23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것은 제외한 다)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 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 6.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 7. 법 제28조에 따른 조난통신 등에 관한 사항
- 7의2.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 차단장치의 도입·폐기신고
- 7의3.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 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인가(제1항제1호의4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인가에 필요한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는 제외한다)
-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 9.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심사 중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
- 10.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 11.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조사
- 12.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 14. 법 제48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에 관한 사항
- 1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 16.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 17.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 확인 및 통지
- 18.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에 관한 조사만 해당한다)
- 19.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허가취소·변경허가, 검사, 폐지·운용휴지·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발급·정정 및 재발급
- 19의2.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판매 중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20.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 ㆍ 징수
- 21.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항제17호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 2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 23.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2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 25. 법 제77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 26.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 27.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제1호의2・제2호・제2호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5호의2・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제6호, 제91조 및 제92조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법제처 53 국가법령정보센터

- 28. 제33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정정・재발급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법 제18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 관리
- 2.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및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신청(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는 제외한다)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 4.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 5.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 6.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 7.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16. 6. 21., 2017. 7. 26.>
- 1. 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 2. 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 4. 법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 ⑤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8. 19,,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1, 12, 9,>
- 1. 법 제34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 3. 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 4. 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31.]
-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2. 1. 11.>
 - 1. 제89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 무선국의 범위 및 전파사용료 감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의2.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 2022년 1월 1일 2. 제1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 3. 삭제<2018. 9. 28.>
 - ③ 삭제<2016. 6. 21.>

[본조신설 2013. 12. 30.]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법제처 5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7. 12. 12., 2018. 9. 28., 2024. 3. 26.>

- 1. 법 제13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 · 제2항, 제58조의7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 · 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 1의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무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3. 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3의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에 관한 사무
- 3의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부과 ㆍ 징수에 관한 사무
- 3의4. 법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 4.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5. 제105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 6. 제113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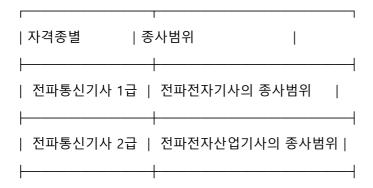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3.]

부칙 <제20669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측정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1일 전에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제91조제3항 후단에 따라 1년 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를 미리 내기 위하여 2008년 1/4분기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1년간은 제 91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로 한다.
- 제4조(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당시의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이후 당시의 체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



| 전파통신기능사 | 전파전자기능사의 종사범위 |

제5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다음 표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 항공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 해상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 육상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 제한무선통신사 |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 육상무선통신사 | 특수무선기사(레이더) | 제한무선통신사 |

- ②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시의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 ③ 정보통신부령 제136호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16일 당시 종전의 전파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표 왼쪽 란에 적힌 자격종목의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자격종목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 본다.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 항공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 제한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 해상무선통신사 |

제6조(재할당의 특례 대상 전기통신역무) 법률 제7815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 1. 이동통신(셀룰러)
- 2. 이동통신(피씨에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 시행령」이나 「전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53호,2008. 6. 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6호,2008. 7. 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확인에 관한 업무
- 2. 법 제19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 개설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 3. 법 제21조제4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3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허가증의 교부·정정 및 재교부
- 4. 법 제2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허가 승계의 인 가 및 신고 수리
- 5.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
- 6. 법 제24조제2항,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준공기한의 연장
- 7.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 9. 법 제3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운용휴 지 및 재운용의 신고
- 10. 법 제36조에 따른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1.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 12.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강도의 측정・조사
-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임대·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 1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 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이 영 제69조제7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무선설비의 설치 명령
- 15.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
- 16. 법 제51조에 따른 혼신 또는 전파장해 조사와 필요한 조치
- 17.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 18. 법 제53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법제처 57 국가법령정보센터

- 19.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 확인 및 통지
- 20.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전파환경에 대한 조사에 한한다)
- 21.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허가취소·변경허가, 검사, 폐지·운용휴지·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교부·정정·재교부
- 22.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 ㆍ 징수
- 23.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123조제5항 중 "체신청장과 진흥원은 제3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과 진흥원은 제2항"으로, "위탁"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부칙 <제21161호,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부칙 <제21692호,2009. 8. 18.>(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② 까지 생략

②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를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로 한다.

② 부터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719호,2009. 9. 9.>(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 제2조제1호, 제26호 및 제28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법제처 58 국가법령정보센터

① 부터① 까지 생략

부칙 <제21807호,2009. 11. 2.>(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⑲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0 부터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8> 까지 생략

<14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을 각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5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10호,2010. 7. 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및 가입자 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 및 별표 8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무선국의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방송국부터 적용한다.
- 제4조(전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4호·제7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424호,2010. 10. 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⑤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제6조"로 한다.

16 부터20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3호,2010. 11. 15.>(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605호,2010.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검사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검사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4호단서 및 제4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 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 제4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 제5조(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6조**(재할당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파수 이용기간의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 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60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7조(소출력방송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소출력방송국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소출력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 ③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개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8조(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0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 **제9조**(검사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증명서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기검사증명서로 본다.
- 제10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위임・위탁된 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전파법」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를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로 한다.

③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전파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을 "「전파법 시행령」제29조"로 한다.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제처 6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7. 「전파법」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제20조"를 "「전기통신사업법」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 ⑨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정책 수립 및 상호인정협정
-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시험・인증기관) 육성 및 관리・감독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시험 등에 관한 업무
-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부칙 <제22771호,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파사용료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 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82호,2011. 8. 19.>(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3759호,2012. 5. 1.>(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98호,2012. 11. 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을 개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전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 단서, 별표 8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 **제4조**(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파통신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 왼쪽란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같은 표 오른쪽란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 귀 기 기 달	
전파전자통신기사	
건화건기투시사어기기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부칙 <제24476호,2013.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법제처 63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61호,2014. 8. 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은 공 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표본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표본모집기간에 준공신고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보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준공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1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준공검사를 하는 무선국에

부칙 <제25795호,2014.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무선국 개설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측정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4조(전파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별표 11의2에 따라 2014년 10월이 속하는 분기의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33호,2015.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② 까지 생략

③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②4 부터③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44호,2015. 12. 3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법제처 64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32호,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 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준공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적합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잠정인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6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및 자격별 검정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 제7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설허가가 신청된 무선국으로서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본다.
- 제8조(선박국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설되어 운영 중인 선박국이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까지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부칙 <제27299호,2016. 6. 30.>(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설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제3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478호,2016.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00호,2017. 1. 24.>

법제처 6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9 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71호,2017. 3. 29.>(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⑩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제2조제1호 및 제26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를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로 한다.

⑰ 부터②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210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제3항, 제20조의9제1항, 제21조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제25조제2호ㆍ제4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집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4조조에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돈사, 제45조제2항, 값 100 및 1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 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3항,

법제처 6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제5호 단서,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2항 • 제3항, 제59조제2항, 제 6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 은 조 제3항·제4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 67조의2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 •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 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제76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제2항, 제77조의6제2항 • 제3항, 제77조의8제1항, 제77조 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제1항 • 제2항, 제77조의11제4항 본문, 제77조 의1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제77조의13제4호,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2항, 제91조제3항 후단, 제93조제 2항,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 4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 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제3항 및 제20조의9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안테나공급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떨머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 · 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265호,2017.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64호,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호 단서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788호,2018.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186호,2018.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8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제29192호,2018. 9. 28.>(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29390호,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6호,2019.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93호,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를 이 영 시행 이후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환급해야 한다.

부칙 <제30807호,2020. 6. 3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⑲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 원"으로 한다.

20 부터27 까지 생략

부칙 <제31195호,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6조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298호,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14호,2021. 9. 2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⑩ 까지 생략

③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부터③ 까지 생략

부칙 <제32200호,2021. 12. 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로 한다.

<63>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329호,2022. 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52호,2022. 1. 2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⑩ 까지 생략

<51>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509호,2022,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13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 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를 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5호,2023. 1. 10.>(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6 까지 생략

③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제41조"를 "「수산업법」제40조"로 한다.

③8 부터④8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321호,2023. 3. 7.>(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17호,2023. 6. 7.>(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7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913호,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 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8호,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제36조에 따른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무선국 중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제4조(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4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를 의뢰한 경우의 평가 항목・방법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98조의2 및 별표 14의4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8조의2에 따른다.

부칙 <제34369호,2024. 3. 29.>(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법제처 7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법 제61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 15호 중 "업무(제70조제2호·제2호의2에 따른 전파의 탐지·분석은 제외한다)"를 "업무"로 한다.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34725호,2024. 7. 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7호,2024.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손실보상금의 산정식

가. 주파수회수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철거비용+부대비용

나. 주파수재배치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신규시설의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철거비용+이 전비용+부대비용

- 2. 제1호의 손실보상금 산정식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산정기준 등
 - 가. "기존시설"이란 무선설비 등 무선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무선국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공고한 날 이전에 허가·신고 또는 주파수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것을 말한다.
 - 나.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이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로 철거되는 기존시설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잔존가액을 말한다.
 - 다. "철거비용"이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라 기존시설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등이 철거시설의 구성부분을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신규시설의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 금융비용을 말한다.
 - (1) 대체시설의 경우

(2) 추가시설의 경우

비고

- 1. 신규시설의 취득가액: 기존 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신규시설로 대체하거나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이자율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잔여 내용연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잔여 내용연수를 말한다. 다만, 잔여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준 내용연수 중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내용연수로 한다.
- 마. "이전비용"이란 주파수재배치로 기존시설의 설치장소를 이전하거나 무선설 비의 부품교체 등 설비 변경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전비

용은 기존시설을 대체하거나 추가하는 신규시설 취득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바. "부대비용"이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무선국 허가·검사 수수료, 손실보상금 산정비용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시설자등에게 관련된 증빙·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시설자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또는 감정평가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등에게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손실보상금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 다.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조사나 보상액 평가를 의뢰받은 자(이하 "조사평가자"라 한다)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평가자에게 보상액의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손실보상금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 라. 보상액의 산정은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목에 따라 다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4.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평가의 세부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

반환하는 주파수할당대가 =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납부금 : 주파수이용기 간) × 잔여 이용기간

비 고 : "잔여 이용기간"은 주파수를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 전 지원 또는 변경·개조 등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 전 지원 또는 변경·개조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경제학 분야 또는 전파공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사회학 분야 또는 통계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인력
시설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개조 등의 지원을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 전파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주파수할당 대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2.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times \times 무선투자촉진계수 \times 주파수 할당률

3.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별 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 × y

-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 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할당으로서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예측이 곤 라한 경우
 - 나.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의 1/2 이상의 대역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 다. 동일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기술적 특성이 현저 히 다른 주파수 대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단위 대역폭당 단가 ×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대역폭

비고

- 1. 제2호 산식에서 "시장"이란 역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집단을 말한다.
- 2. 제2호 산식의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에서 제4호 에 따라 할당대가를 산정한 주파수 대역폭에 따른 예상매출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3. 제2호 산식에서 "무선투자촉진계수"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전파기술발전 및 무선국 구축·운용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값을 말한다. 이 경우 "무선투자촉진계수"의 최대치는 1로 한다.

- 4. 제2호 산식 및 제3호 산식에서 "x" 및 "y"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이 경우 x와 y를 합한 값은 100분의 3으로 한다.
- 5. 제2호 산식에서 "주파수 할당률"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른 값을 말한다.

(개별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 × 대역폭 조정계수) ÷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 × 대역폭 조정계수)

- 가. "대역폭 조정계수"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할당대상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이 경우 "대역폭 조정계수"의 최대치는 1로 한다.
- 나.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대역폭"에서 제4호에 따라 할 당대가를 산정한 주파수 대역폭은 제외한다.
- 6. 제3호 산식에서 "실제매출액"이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 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 7. 제4호 산식에서 "단위 대역폭당 단가"란 할당대상 주파수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특성, 기대수익 및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지정기준
인력 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전자・통신・전파 등 전파통신 분야 또는 경영・경제・법률 분야 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파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 상인 사람 나. 전자・통신・전파 등 전파통신 분야 또는 경영・경제・법률 분야 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파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 상인 사람 다. 주파수 소요량 또는 이용현황 조사・분석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시설 기준	1.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분석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시스템을 갖출 것 2.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유지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갖출 것

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

전파발사는 필요주파수대폭과 그 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한다.

선파발사는	<u> </u>	수대폭과 그 능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한다.	
구 분		필요주파수대폭 및 특성	문 자 및 기 호
 1. 필요주피	·수대폭 :	0.001Hz에서 999Hz 사이의 Hz	Н
		1.00kHz에서 999kHz 사이의 kHz	K
		1.00배전에서 999배 사이의 배호	M
		1.00대z에서 999대z 사이의 대z	G
문자는 소			
에 두어 된			
대폭단위를			
(0의숫자,			
G의 문자는	,		
수대 표시			
둘 수 없다).		
2. 등급 : 탈	발사전파는	1. 기본 특성	
기본 특성이			
급과 기호.			N
되, 보다 ·		(2) 주반송파가 진폭변조(부반송파의 각이 변조	
술을 표시	_ , _ ,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발사	
여 취사형	추가 특성	(가) 양측파대	A
 을 첨가 /	사용할 수	(나) 단측파대의 전반송파	Н
있다.		(다) 단측파대의 저감 또는 가변레벨반송파	R
		(라) 단측파대의 억압반송파	J
		(마) 독립측파대	В
		(바) 잔류측파대	С
		(3) 주반송파의 각이 변조된 발사전파	
		(가) 주파수변조	F
		(나) 위상변조	G
		(4) 주반송파가 동시 또는 미리 정하여진 순	D
		서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진폭과 각이 변	
		조된 발사전파	
		(5) 펄스발사[주반송파가 퀀타이즈(펄스부호	

변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으로	
부호화된 신호에 따라 직접 변조된 발사는	
(2) 및 (3)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무변조 연속펄스	Р
(나) 연속펄스	
1) 진폭변조된 것	K
2) 폭(기간)이 변조된 것	L
3) 위치(위상)가 변조된 것	M
4) 반송파가 펄스기간 중 각이 변조된 것	Q
5) 위 변조된 펄스의 조합 또는 다른 방	V
법에 따라 발생된 것	
(6) (1)부터 (5)까지 규정된 것 외의 경우	W
로서 주반송파가 진폭·각 및 펄스 중	
둘 이상이 조합되어 동시 또는 미리 정	
하여진 순서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변	
조된 것	
(7) (1)부터 (6)까지 규정된 것 외에 변조	X
된 것	
그 트레 하는, 것이 사이를 내고 하려면 가는지	
나. 둘째 기호: 주반송파를 변조시키는 신호의	
다. 둘째 기호: 수반송과들 먼소시키는 신호의 특성	
	0
특성	0
특성 (1) 무변조신호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퀀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1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3)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퀀타이즈 또는	1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3)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퀸타이즈 또는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2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3)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퀸타이즈 또는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4)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1 2 3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3)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4)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5)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둘	1 2 3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3)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4)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5)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둘이상의 채널	1 2 3 7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3)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4)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5)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둘이상의 채널 (6)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채널	1 2 3 7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3)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4)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5)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둘이상의 채널 (6)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채널 (7)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하	1 2 3 7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3)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4)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5)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둘이상의 채널 (6)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둘이상의 채널 (7)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채널에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1 2 3 7

채널	
다. 셋째 기호: 송신할 정보(표준주파수발사·지	
속파 및 펄스데이터등과 같은 일정한 불변특	
성의 정보를 제외한다) 형태	
(1) 정보송출이 없는 것	N
(2) 전신: 가청수신용	A
(3) 전신: 자동수신용	В
(4) 팩시밀리	С
(5) 데이터전송·텔레메트리·텔레코멘트	D
(6) 전화(음성방송을 포함한다)	Е
(7) 텔레비전(영상)	F
(8) (1)부터 (7)까지의 조합	W
(9) (1)부터 (8)까지 규정된 것 외의 정보형태	X
라. 첫째 기호, 둘째 기호 및 셋째 기호에 있어	
서 지정된 필요주파수대폭이 그로 인하여 증	
대되지 아니할 경우 단기간 및 식별 또는 호	
출용 등 부수목적용으로만 사용된 변조는 무	
시할 수 있다.	
2. 취사형 추가적 특성	
가. 넷째 기호: 신호의 항목	
(1) 상이한 수 또는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A
부호	
(2) 오자 정정장치가 없고 동일한 수와 기간	В
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3) 오자 정정장치가 있고 동일한 수	C
와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4) 4조건 부호로서 각각의 조건이 신호소자	D
(1이상의 비트. 이하 같다)를 표시한 것	
(5) 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조건이 신호소	Е
자를 표시한 것	
(6) 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조건 또는 조건	F
의 조합이 한 문자로 표시된 것	
(7) 음성방송(모노포닉)	G
(8) 음성방송(스트레오 또는 콰트라포닉)	Н
(9) 상용음성[(10) 및 (11)의 분류를 제외한	J

다]	
(10) 주파수반전 또는 주파수대 분할방식을	K
사용한 상용음성	
(11) 복조신호레벨을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L
주파수변조신호를 가진 상용음성	
(12) 흑 백	M
(13) 천연색	N
(14) (1)부터 (13)까지의 조합	W
(15) (1)부터 (14)까지 규정된 것 외의 것	X
나. 다섯째 기호: 다중화 특성	
(1) 다중화가 아닌 것	N
(2) 부호-분할다중(대역폭 확장기술을 포함한	C
다)	
(3) 주파수-분할다중	F
(4) 시-분할다중	T
(5) 주파수-분할다중과 시분할다중의 조합	W
(6) (1)부터 (5)까지 규정된 것 외의 다중방식	X
다. 넷째 기호 및 다섯째 기호에 있어서는 그 기	
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호자리는 대	
시(-)로 표시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6. 6. 21.>

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

- 1. 전파의 주파수는 3,000版 이하의 것은 版, 3,000版 초과 3,000版 이하의 것은 版로 표시한다. 다만, 주의 가용상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시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있다.
- 2. 전파의 주파수대열은 그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아홉 개의 주파수대로 구분한다.

주파수대의 주파수 범위	주파수대번호	주파수대약칭	미터법에 따른 구분	
3㎞ 초과 30㎞ 이하	4	VLF	밀리아미터파	
30㎞ 초과 300쌦 이하	5	LF	킬로미터파	
300씺 초과 3,000씺 이하	6	MF	핵터미터파	
35월 초과 30월 이하	7	HF	데카미터파	
30吨 초과 300吨 이하	8	VHF	미터파	
300㎞ 초과 3,000赈 이하	9	UHF	데시미터파	
30地 초과 300地 이하	10	SHF	센티미터파	
300址 초과 3000址 이하	11	EHF	밀리미터파	
300대 초과 3,000대 이하	12		데시밀리미터파	
(또는 31版 이하)				

3.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를 함에 있어서 H2A전파·H2B전파·H2D 전파·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파수의 표시는 반송주파수로 하고, 그 전파의 할당주파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에 할당주파수는 반송주파수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구 분		할 당 주 파 수	
	1. 선택호출장치 또는 비상 위치	반송주파수보다 1,100Hz가 높은 주	
Н2А∙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파수	
H2B	2. 제1호 외의 것	반송주파수보다 500Hz가 높은 주파	
	2. 제1호 되기 것 	수	
R3E·H3E·J3E		반송주파수보다 1,400Hz가 높은 주	
		파수	

■ 전파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4. 7. 23.>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

- 1. 물건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 가.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 가액
 - 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전파차단장치 사용 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3. 생명 · 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 가.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나.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 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 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다.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나목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라목과 같다.

라.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목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

무선국 구분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설치장소 기준
1. 이동통신·휴대인터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넷의 기지국・이동중	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계국	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와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테나가 모두 옥내에 설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
	치되는 경우에는 개별 안	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
	테나공급전력이 30와트를	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
2.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	의 합이 500와트 이하이고 안
· 이동중계국 · 육상국	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	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하는 경우	인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
3. 무선호출・주파수공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	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용통신 • 무선데이터통	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	
신 · 위치기반서비스의	하는 경우	
기지국・이동중계국		
4. 방송국·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	
	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	
	하는 경우	_
5. 무선항행육상국 • 무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선탐지육상국(해당 무	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선국의 실험국을 포함	하는 경우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다)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
		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
		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
		만, 안테나 주엽빔의 상향각
		이 0도 이하인 경우에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교 그림인다.

- 1. 「군용전기통신법」 등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설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2. 보행로가 없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일반 인의 도보 통행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 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 에 따른 적합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 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면 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인증 및 적합 등록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 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 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 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 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 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 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 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	1대	
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과학기술정보통신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	부장관이 인정하는	
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증을	수량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카.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	부장관이 인정하는	
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	수량	
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		
재		

2.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 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에 따른 적합 인증 및 적합 등록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 입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 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 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 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 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 에 따른 적합 인증 및 적합 등록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 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 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 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 술기준과 적합성평 가기준이 같은 기자 재의 수량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적 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평 가기준이 일 부 같은 경우, 해당 적합성 평가기준에 대한 시험

4.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	----------	-------	-------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 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 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 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주파수대(Mbz)	전파의 폭(klb)	안테나공급전력(w)
	2	2.8	50w 이하
선박국	27	2.8	20w 이하
	156	16	25w 이하
항공기국	100	6	10w 이하
간이무선국	146	8.5 이하	5w 이하
이동국	897	10	3w 이하

비고: 이동국은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897.90 ~ 897.93Mb)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정한다.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

1. 사업자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사업자별 전파사용료=(가입자수×단가)×감면계수[1-{(공용화감면계수+ 환경친화감면계수)×공용・환경친화명령이행률+로밍 감면계수+이용효율감면계수}]×전파특성계수

2. 가입자 수 산정기준: 사업자별로 매분기초 시작일과 매분기말 종료일의 가입자수를 합하여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 수를 산정할 때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입자 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입자 수는 제외한다.

3. 서비스별 단가표

서비	미스	단가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다만,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6.5cm 이상					
이동	통신	29.5趾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					
		우에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원으로 한					
		다.					
휴대약	민터넷	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무선	호출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주파수 등	공용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위치기법	반서비스	가입자당 분기별 50원					
무선데여	미터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30원					
이서중리트제	음성 및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500원					
위성휴대통신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80원					

비고

1. 이동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로서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및 아이엠티이천 등을 포함한다.

2. 위 서비스별 단가표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관리·제어 등을 위해 사물의 상태나 사물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만을 송신·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 대통신에 대해서도 무선데이터통신 단가를 적용한다.

4. 공용화·환경친화 및 로밍 감면계수 산정기준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로밍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환경친화 감 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로밍 감면 계수	0.05	0.10	0.15	0.20	0	25	0.30			

비고

- 1. 공용화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 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 설비를 공동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2. 환경친화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3. 로밍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상 호접속 계약에 따라 로밍기술이 적용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 다.
- 4의2. 공용·환경친화명령이행률: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으로서 법 제 4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직전년도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명령 이행 대상 무선국 중 이행이 완료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

5. 이용효율 감면계수 산정기준

주파수 이용효율(%)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이용효율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비고

- 1. 주파수 이용효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용 중인 주파수(FA)당 평균 가입자수를 기본수용용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2. 이동통신의 주파수(FA)당 기본 수용용량은 5账 미만인 경우에는 500,000명으로 하고, 5账 이상인 경우에는 1,500,000명으로 하며, 휴대인 터넷의 기본 수용용량은 700,000명으로 한다.
- 3.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대통신에 대하여는 주파수 이용효율 감면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전파특성계수

주파수 대역	전파특성계수				
1대 미만	1.16				
16址 ~ 36址 미만	0.81				

비고: 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위치기반서비스·무선데이터통신, 위성휴대통신 및 법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파특성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

1. 무선국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무선국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 전파사용량계수× 서비스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 2. 기초가액: 250,000원
- 3. 전파사용량계수: 해당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지정된 모든 전파의 사용량과 사용주파수대역이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를 말한다.

대역	전파 사용량 (Mbz)	0.1 미 만	0.1 항 0.3 만	0.3 이상 1.5 미만	1.5 이상 4 미만	4 이상 7 만	7 양 10 만	10 이상 15 만	15 앙 20 만	20 이상 30 마만	30 양 40 만	40 이상 60 마만	60 이상 80 마만	80 이상 110 민	110 항 150 만	150 이상
1 GHz	미만	1	2	3	5	7	9	12	15	19	23	28	33	38	44	50
1 GHz 3 GHz	이상 미만	0.7	1.4	2.1	3.5	4.9	6.3	8.4	10.5	13.3	16.1	19.6	23.1	26.6	30.8	35
3GHz 1 OGHz	이상 미만	0.23	0.47	0.70	1.17	1.64	2.11	2.81	3.51	4.45	5.38	6.55	7.72	8.89	10.3	11.7
10GHz 30GHz		0.03	0.07	0.10	0.17	0.24	0.31	0.41	0.51	0.65	0.78	0.95	1.12	1.29	1.50	1.7
30GHz	이상	0.004	0.008	0.012	0.02	0.028	0.036	0.048	0.06	0.076	0.092	0.112	0.132	0.152	0.176	0.2

비 고: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아날로그방식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량계수를 위 계수에 3을 곱한 값으로 한다.

4. 서비스계수

		무 선 국	계수
		1) 마이크로웨이브용 무선국	0.5
7].	그 저 구	2) 가입자회선용 무선국	0.25
/ F.	가. 고정국	3) 도서통신용 무선국	0.05
		4) 그 밖의 고정국	1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	한 위성방송보조국	0.03
다.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	0.012	
라.	그 밖의 무선국	1	

5. 공용화 및 환경친화 감면계수 산정기준

고 Q 최 O	10	10	20	30	40	45	50	55	60	70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10 미만	이상								
천·정·신화뀰(%)	비단	20	30	40	45	50	55	60	70	100

		미만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환경친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비고

- 1. 공용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2. 환경친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 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2. 2. 2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

1. 무선국의 송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정된 주파수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안테나공급전력+전파의 폭)× 선호계 수× 이용형태계수× 목적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 -환경친화 감면계수)

- 2. 기초가액: 2천원
- 3. 안테나공급전력: 와트를 단위로 산정한다.
- 4. 전파의 폭: ktb 단위로 산정하되, 1ktb 미만인 경우에는 1ktb로 하고 960ktb 이상의 주파 수대에서는 전파의 폭이 1ktb 미만인 경우 1ktb로 한다.

5. 선호계수

	계 수		
UHF	300째 이상 9	1.5	
VHF	28吨 이상 3	800째 미만	1.3
중단파 이하		28짼 미만	1
준마이크로파	960째 이상	0.1	
	36世 이상	0.0234	
마이크로파	건물 등 일정한 구역 에서만 28.96k 100k 이상 300k 미만 29.50k 이하의 주피 이용하는 경우		0.0017
		그 밖의 경우	0.0034
밀리미터파	30趾 이상		0.0004

6. 이용형태계수

이 용 형 태	계 수
단 독 이 용	1
공 동 이 용	0.1

비고: "단독이용"이란 전국적으로 시설자가 특정한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이용"이란 그 외의 경우를 말한다.

7. 목적계수

운 용 목 적	계수	
가. 무선항행업무[레이다·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거리측정기·전파고 도계]	0.5	
나. 무선측위(탐지 및 표지를 포함한다)업무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업무	1	

8. 공용화 및 환경친화 감면계수 산정기준

공용화율,		10	20	30	40	45	50	55	60	70
환경친화율	10	이상								
	미만	20	30	40	45	50	55	60	70	100
(%)		미만								
공용화 감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면계수	0.01	0.02	0.00	0.04	0.00	0.00	0.07	0.00	0.03	0.10
환경친화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3	0.00	0.07	0.00	0.09	0.10

비고

- 1. 공용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 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설비를 공동 사 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2. 환경친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1]

<u>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u> <u>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u>(제90조제2항제3호 관련)

종 별	전파사용료(원)
1. 선박 및 자동차 등 이동체에 개설하는 지구국	20,000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	20,00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무선국(자가통신을 위하여 기지	3,000
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한 자가 개설하는 육상이동	
국은 제외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14.8.27.>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제91조제1항 관련)

분기	기간	징수기간
1/4 분기분	1월부터 3월까지	해당 연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2/4 분기분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연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4 분기분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연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4/4 분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연도 2월 18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6. 6. 21.> <u>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u>(제95조제1항 관련)

무서그이 주변	안테나공급전력에 의	허 가 신 청	재허가신청	변경허가신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전력에 의 한 송신기의 규모	수수료	수수료	청 수수료
선박국(총톤수 500				
톤 미만인 어선의	50W 미만	1만2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선박국은 제외한	50W 이상	2만3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다)과 항공기국				
총톤수 500톤 미만	50W 미만	4천원	4천원	4천원
인 어선의 선박국	50W 이상	1만1천원	6천원	6천원
법 제24조의2제1				
항제4호에 따른	50W 미만	1만원	_	_
선박국 및 항공기	50W 이상	2만8천원	_	_
국				
	100W 미만	7만5천원	7만5천원	7만5천원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제외한	100W 이상 1kW 미만	15만원	8만7천원	8만7천원
다)	1kW 이상 10kW 미만	30만원	8만7천원	8만7천원
	10kW 이상	45만원	8만7천원	8만7천원
	100W 미만	12만원	12만원	11만7천원
	100W 이상 1kW 미만	23만7천원	18만1천원	11만7천원
텔레비전방송국	1kW 이상 10kW 미만	44만3천원	18만1천원	11만7천원
	10kW 이상	59만원	18만1천원	11만7천원
실험국과 아마추	50W 미만	5천원	4천원	4천원
어국	50W이상 100W 미만	1만1천원	4천원	4천원
	100W 이상	1만6천원	4천원	4천원
지다 <u>아</u> 요서비	50W 미만	5천원	_	4천원
전파응용설비	50W 이상	1만원	_	7천원
그 밖의 무선국	50W 미만	1만5천원	8천원	8천원
	50W이상 100W 미만	2만2천원	8천원	8천원
	100W이상 500W 미만	4만원	8천원	8천원
	500W 이상	4만4천원	8천원	8천원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12. 27.>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

1.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1. 1 U T H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전력에 의 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 할당받은 주파수를	100W 미만	10만원	8만3천원	8만3천원	8만3천원
사용하는 무선국	100W 이상	11만6천원	8만5천원	8만5천원	8만5천원
2. 어선의 선박국(총	12W 미만	1만8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2천원
톤수 500톤 미만의 것)	12W 이상 50W 미만	2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50W 이상	4만3천원	2만8천원	2만8천원	2만8천원
3. 방송국(텔레비전방송	10kW 미만	54만원	50만원	30만원	25만2천원
국은 제외한다)	10kW 이상 50kW 미만	70만원	60만원	36만원	35만원
	50kW 이상	100만원	78만원	45만원	45만원
4. 텔레비전방송국	100W 미만	52만1천원	43만1천100원	25만1천500원	25만2천원
	100W 이상 1kW 미만	77만300원	63만7천300원	36만6천500원	36만6천500원
	1kW 이상 10kW 미만	101만9천200원	84만5천100원	49만2천200원	49만3천100원
	10kW 이상	122만5천900원	101만4천400원	59만1천500원	59만2천원
5.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1만원	9천원	9천원	9천원
	50W 이상 500W 미만	1만7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500W 이상 5kW 미만	3만원	1만9천원	1만9천원	1만9천원
	5kW 이상	3만7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6. 그 밖의 무선국	0.5W 미만	1만원	8천원	8천원	8천원
	0.5W 이상 5W 미만	3만1천원	2만4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5W 이상 50W 미만	8만4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50W 이상 500W 미만	14만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500W 이상 5kW 미만	18만6천원	14만1천원	13만9천원	13만9천원
	5kW 이상	22만2천원	16만5천원	16만5천원	16만5천원

2.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 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00W 미만	1만1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100W 이상 1kW 미만	1만6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kW 이상 10kW 미만	2만4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0kW 이상	3만2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비고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96조 및 제 9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무선국별로 2만원의 준공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이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여 산정된 검사수수료에서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16. 6. 21.>

레이다 및 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

송신기의 첨두전력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0kW 미만	3만1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10kW 이상 100kW 미만	8만4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100kW 이상 1,000kW 미만	14만1천원	10만5천원	10만5천원	10만5천원
1,000KW 이상	18만6천원	13만9천원	13만9천원	13만9천원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제97조의2 관련)

구	수수료	
1.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	88,000원	
2. 시험장평가용 안테나	가. 기본	113,000원
Z. 시험성청/F공 인데다	나. 1파장 추가시마다	36,000원
3. 루프안테나		147,000원
4. 광대역안테나		160,000원
5. 전원안정화회로망		96,000원
6. 흡수클램프	155,000원	
7. 전자기 클램프	155,000원	
8. 결합·감결합 회로망	96,000원	
9. 전계 프로브	211,000원	
10. 정전기 발생기	96,000원	
11.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116,000원	
12. 서지(surge) 발생기	116,000원	
13. 전원전압변동장치		96,000원

비고

- 1. "흡수클램프"란 주 전선을 따라 이동하며 방출되는 최대 무선 주파수 전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2. "전자기 클램프"란 주 전선을 따라 이동하며 전자기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3. "서지(surge)"란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의3] <개정 2024. 7. 23.>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

1. 적합성평가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8제4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신청)

구분	수수료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잠정인증	165,000원

나. 변경신고 수수료

유형	구분	수수료
1)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적합인증	165,000원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적합등록	55,000원
2)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적합인증	5,000원
기준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	적합등록	2,000원

- 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신청, 지정갱신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
 - 가.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 1) 신청 수수료: 50.000원
 -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 나.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분 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 1) 신청 수수료
 - 가) 지정분야 추가: 50,000원
 - 나) 시험항목 추가: 20,000원
 -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 다.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
 - 1) 신청 수수료: 50,000원
 -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 라.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 1) 신청 수수료
 - 가) 지정분야 추가: 50,000원
 - 나) 시험항목 추가: 20,000원
 -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 마.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용은 면제한다.

비고

- 1.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출장여비"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의4] <신설 2024. 3. 26.>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

평가항목		수수료
방사성 방호성능 평가 (측정 주파수당)		23,000원
전도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도전성 선로 1개당, 국립전파연구원 시험실에서 시험)	단펄스	135,000원
	중펄스	113,000원
	충전선 펄스	102,000원
	삽입손실	168,000원
전도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 (도전성 선로 1개당, 현장에서 시험)	단펄스	160,000원
	중펄스	135,000원
	충전선 펄스	122,000원
	삽입손실	189,000원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의5] <신설 2024. 3. 26.>

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

잔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감경률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00분의 10
12개월 초과 18개월 이하	100분의 20
18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100분의 30
24개월 초과 30개월 이하	100분의 40
30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100분의 50
36개월 초과 42개월 이하	100분의 60
42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100분의 70
48개월 초과 54개월 미만	100분의 80

비고: "잔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란 제44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기준무선국의 종 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검사 대상 무선국의 종전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16. 6. 21.>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

자격종목	검정과목	출제내용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2. 항공 관련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3.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중 항공관련 통신에 관한 규정
항공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통신사	기초전파공학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 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영어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교통관제 영어의 기초 지식 2. 항공교통관제용어 3.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무선통신술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중 무선국 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무선전화에 의 한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운용 절차에 관한 규정 3.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중 세계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에 관한 규정
해상 무선통신사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해상통신 설비의 운용	1. 초단파대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설비의 운용 2. 네비텍스수신기의 운용 3.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구명무선 설비의 운용 4. 해상 무선설비 및 레이다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기술
	해사통신 영어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 영어의 기초지식 2. 무선전화용어 3.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육상 무선통신사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중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초 전파공학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레이다의 이론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3. 무선전화, 다중통신무선설비, 팩시밀리 및 텔레미 터 등 관련 무선설비 시스템의 운용조작 및 보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전파법규	전파 관련 법규 중 해당국의 운용에 관한 규정
제 한 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 취급방법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디지 털 포함) 2. 해당 무선설비 및 레이다의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 에 관한 사항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파의 전파특성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무선측정 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
	영어	일반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무선통신술	1. 전파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 약어 및 통화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 에 관한 사항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기초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 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영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무선통신술	1. 전파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 약어 및 통화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 에 관한 기초사항
제3급 아마추어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기사(전신급)	무선설비 취급방법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무선통신술	1. 전파 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제3급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 에 관한 기초사항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화급)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 취급방법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제4급 아마추어	전파법규	1. 전파 관련 법규 기초지식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중 아마추어업무에 관

		한 기초지식
무선기사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기초지식
	중건모인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기초지식
	무선설비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 – – ,	포함)
	취급방법	2. 아마추어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초적 사항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응시하는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1.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또	전파공학
선설비기능사	는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	무선설비취
	신급 및 전화급) 또는 제4급	급방법
	아마추어무선기사	
	육상무선통신사	기초전파공
		학
2.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공학 •
		통신보안
3.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	통신보안
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신사, 항공무선통신사	
4.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허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영어 • 통신
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보안・무선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3년 이상 계		통신술
속하여 운용하는 사람		
5.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자격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통신보안 •
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		무선통신술
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사람		
6.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허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	통신보안
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신급 또는 전화급)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		
속하여 운영하는 사람		
7. 육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	통신보안
	신사	
8. 해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	통신보안
	I	

	신사	
9.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	통신보안
	신사	
10.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	전파법규 •
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신급)	통신보안 •
		무선설비
		취급방법
11.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	육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 •
검정 접수일 현재 육상의 무선국에서 3		통신보안
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		
람		
12.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	해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ㆍ
검정 접수일 현재 해상의 무선국에서 3		통신보안
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		
람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

자격종목	종사범위
1. 전파전자통신	가.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기사	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다.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의 통신
	운용 및 기술운용
	라.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마. 그 밖에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2. 전파전자통신	가. 다음에서 정한 통신운용
산업기사	1) 국내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2) 국제통신을 위한 선박국·항공국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3)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기술운용
	1)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
	의 무선전신·무선전화·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3)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방송국의 무선전화는 제외한
	다)·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4) 레이다
	5)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
	(방송국의 무선설비, 다중무선설비 및 텔레비전은 제외한
	다)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것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로
	서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외부 조정
	다.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3. 전파전자통신	라.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기사의 지휘 아래에서 하는 운용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다중무선
기능사	설비의 기술운용은 제외한다)
	1)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
	의 무선전신·무선전화·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다음에 규정된
	것
	가) 해안국과 항공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25
	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나) 어업용 해안국 외의 해안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
	트 이하의 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다) 항공국과 방송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
	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
	나.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의 통신
	운용
	다.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라.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에서 하는 운용
4. 항공무선통신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은 제외한다)
사	1)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	무선국의 무선설비
	2)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
	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 한다)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1)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2)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3) 레이다 4)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 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5. 해상무선통신 1)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전화설비 사 및 보조설비 2)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 의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운용 1) 레이다 2) 가목2)의 무선설비 다.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항 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전 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통신운용 및 기술 운용 가.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 6. 육상무선통신 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한 사 다)의 통신운용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

용

2)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운용하는 무선설비 3) 레이다 외부의 전화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 는 무선설비 4) 가목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가.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 7. 제한무선통신 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선박에 개설한 디 사 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운용 1) 레이다 2) 가목의 무선설비 8.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및 공사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9. 무선설비산업 1) 안테나공급전력이 3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기사 및 무선데이터 2)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4)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 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가목 외에 무선설비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으로서 무 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하는 기술운용 다.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 1) 안테나공급전력이 3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
	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무선설비의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10. 무선설비기능	하는 공사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u>۸</u>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팩
·	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레이다
	3) 그 밖에 안테나공급전력이 1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가목 외의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기술운
	용으로서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기술운
	다.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팩
	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레이다
	3) 1) 및 2)의 규정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50
	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4) 그 밖에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
44 3147 11-1-7	공사로서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공사
11. 제1급 아마추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어 무선기사 12. 제2급 아마추	운용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
어 무선기사	<u>.8</u>
13. 제3급 아마추	가. 전신급: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
어 무선기사	선설비로서 21메가헤르츠 이상 또는 8메가헤르츠 이하의 주
(전신급/전화급)	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나. 전화급: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

	선설비로서 21메가헤르츠 이상 또는 8메가헤르츠 이하의 주
	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14. 제4급 아마추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
어 무선기사	메가헤르츠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15. 방송통신기사	방송국의 무선설비 및 연주소 시설의 기술운용
16. 방송통신산업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방송국 무선설비 및 연
기사	주소 시설의 기술운용
17. 방송통신기능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방송국 무선설비 및 연주소
사	시설의 기술운용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16. 6. 21.>

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

무선국		무선종사자
	가. 250와트 초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2명, 전파전자통신
1. 무선전신을	과 해안국	기능사 1명
행하는 해안국	나. 250와트 이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
	하 해안국	기능사 2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제한무선통신사
2. 무선전화를 행하는 해안국		2명
3. 세계 해상조	가. 250와트 초	고리고기트 시키느 기 OFH
난 및 안전제	과 해안국	전파전자통신기능사 3명
도 시행에 필		
요한 무선설비	나. 250와트 이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해상무선통신사
를 주로 행하	하 해안국	2명
는 해안국		

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

1. 해안지구국

전파전자통신기사 또는 무선설비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또는 무선설비기능사 1명

2. 지구국[안테나의 지름이 3m 이상으로서 휘더링크(Feeder Link)를 구성하는 것에 한정한다]

무선설비기사1명무선설비산업기사1명무선설비기능사1명

3. 그 밖의 지구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지구 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기능사 1명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16. 6. 21.>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

		자격별 정원			
선박의 종류		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	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		
		하고 육상정비체계를 갖춘	하고 선상정비체계를 갖춘		
		선박	선박		
1. 국제여객선	가. 여객 정원2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유선 및 도선	50명 이상	1명	1명		
() () () () () () () () () (나. 여객 정원2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포함)	50명 미만	1명	1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2. 어선		1명	1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3. 화물선 및 2	그 밖의 선박	1명	1명		

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 ㆍ 정원 배치기준

(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

<u></u> 크
) , ,)
14
무선
통신
을 가
<u></u>
무선
통신
을 가
자통
가
통신
을 가

비고

-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다.
- 2. 제2호가목의 원양어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며, 위 표 제2호 나목의 연·근해어업 등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19. 12. 17.>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 · 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

		자 격 별	정 원	
구 분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계
안테나공급전력	기사	기사	방송통신기능사	ਾਜ਼ੇ
1.5킬로와트 이상	1명	1명	1명	3명
안테나공급전력		1 11	ord.	o Fd
1.5킬로와트 미만 500와트 이상		1명	2명	3명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초과 500와트 미만			2명	2명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			1명	1명
연주소			2명	2명

비고

- 1.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방송국 및 원격제어 등의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송신소·중계소의 경우에는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자격별 정원은 연주소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연주소와 송신소 간 원격제어 등의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주소를 위한 무선종사자가 송신소를 위한 무선종사자를 겸임할 수 있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2의2] <개정 2016. 6. 21.>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

-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행정처분(중지처분・업무정지・운용제한・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가. 별표 23의 경우: 최근 3년간
- 나. 별표 22의3, 별표 22의4, 별표 22의5, 별표 22의6, 별표 24, 별표 25 및 별표 26의 경우: 최근 1년간
-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처분권자가 반드시 취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중지처분・업무정지・운용제한・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인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법률 규정에 따른 상한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기간, 행정처분의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전파관리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중지처분・업무정지・운용제한・운용정지 및 업무종 사정지만 해당한다)의 기간 중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8조제1호 관련)

ما بنا بنا م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14조제8항	승인 취소		
로 승인을 받은 경우	제1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	법 제14조제8항	시정명령	승인 취소	
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	제3호			
우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	법 제14조제8항	시정명령	승인 취소	
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제2호			
경우				
4. 법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14조제8항	승인 취소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제4호			
않은 경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

	근거	위1	반횟수별 쳐	귀분기준
위반내용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 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 는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
2.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 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
3.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
4.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

■ 전파법 시행령 [별표22의5] <신설 2016. 6. 2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8조제1호의3 관련)

	근거	위반	횟수별 처분	분기준
위반내용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41조제7항	승인		
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제1호	취소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법 제41조제7항	시정	승인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	제3호	명령	취소	
한 경우				
3. 법 제2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	법 제41조제7항	시정	시정	승인
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제4호	명령	명령	취소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승인 조	법 제41조제7항	시정	승인	
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	제2호	명령	취소	
한 경우				
5. 법 제4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	법 제41조제7항	승인		
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제5호	취소		
하지 않은 경우				

	근거 위1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내용	·	4-1 61-1	2차 위반	3차 이상	
	법조문	1차 위반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42조의2	승인			
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제1호	취소			
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	법 제42조의2	시정	시정	승인	
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	제4항제3호	명령	명령	취소	
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법 제42조의2	시정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	제4항제2호	명령	취소		
반한 경우					
4. 법 제4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법 제42조의2	승인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	제4항제4호	취소			
행하지 않은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

	근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버 게드이즈	치정면권	시저면권	위반 취소
				刊立
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수입 • 판매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호		또는 사용	
		사용중지	, -	
			(2개월)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	법 제58조	시정명령	생산・수입	생산・수입・ 판매
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의4제1항제		• 판매 또	또는 사용중지
않은 경우	2호		는 사용중	(2개월)
			지	
			(1개월)	
3.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	법 제58조	취소		
기적합확인표시를 거짓	의4제1항제			
으로 표시한 경우 4. 법 제58조의2제2항에	2호 법 제58조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	의4제1항제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3호			
않은 경우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시정명령	생산・수입	취소
관련된 사항에 대한			• 판매 또	
변경신고를 하지 않			는 사용중	
은 경우			지	
			(2개월)	
나. 가목 외의 사항에		시정명령	· · · · · · · · · · · · · · · · · · ·	시정명령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8조의2제5항을	법 제58조	시정명령	생산・수입	생산・수입・ 판매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의4제1항제		• 판매 또	또는 사용중지
보관하지 않은 경우	4호		는 사용중	(4개월)
			지	

C 버 ᅰ드O코이이레7참호	버 레드이고		(2개월)	
6. 법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				
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	5호			
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				
개하지 않은 경우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시정명령	생산 • 수입	취소
관련된 변경 사항을			• 판매 또는	
서면으로 관리하지			사용중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			(2개월)	
은 경우 나. 가목 외의 변경 사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항을 서면으로 관리				
하지 않거나 공개하				
지 않은 경우 7. 법 제58조의13제1항	법 제58조	취소		
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	의4제1항제			
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취소		
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	의4제2항제			
가를 받은 경우 9. 법 제58조의4제1항에	1호 법 제58조	취소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	의4제2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호			
경우	מל. אוו. ⊶ורי)]리리크 -		

비고: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수거·파기 명령을 하여야 한다.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

	근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법 제58조의7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제2항제1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6개월	1년
경우			
나. 시험결과와 다르게 거짓으로		업무정지	업무정지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다.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		6개월	1년
한 자가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			
적서를 발급한 경우 라.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않은 시험항목을 시험하여 시험		6개월	1년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마. 적합성평가기준 중 일부 기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에 대한 시험항목을 누락하여 시 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개월	6개월
바. 적합성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로		3개월	6개월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 적합성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로		1개월	3개월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아. 부적합한 시험설비로 시험하여		업무정지	업무정지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급구경시 1개월	3개월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8조의6	법 제58조의7	업무정지	업무정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	제2항제2호	3개월	6개월
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법 제58조의7		
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제2항제3호	어디자카	어디자카
가.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분야의 시험 인력이 없는 경우 나.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 설비가 없는 경우 다. 그 밖에 지정요건에 부적합하 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1년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58조의7 제2항제5호 법 제58조의7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로 지정을 받은 경우 7.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 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 한 경우		지정취소	
8. 법 제5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 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 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3항제3호	지정취소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

	근거	위	반횟수별 처	분기준
위반행위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		허가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또는 폐지		
하게 된 경우	0/1111	<u> </u>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72조제2	허가 취소		
방법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항제2호	또는 폐지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	법 제72조제2	허가 취소		
선국의 허가증 또는 법 제22	항제3호	또는 폐지		
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				
기한(법 제24조제2항에 따				
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				
치지 않은 경우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버 ᅰ79조체9	으요 저 기	으요저기	허가 취소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왕세4모	2개월	4/17 包	폐지
운용한 경우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법 제72조제2	운용정지	운용정지	허가 취소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선국을	항제4호	1개월	2개월	폐지
운용한 경우 6.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	법 제72조제2	허가 취소		
의 무선국을 법 제24조제1	ठो	또는 폐지		
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제4호의2			
않고 운용하거나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		-1_1 =1 >		
7.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또는 폐지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제4호의3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				
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				
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8.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	법 제72조제2	운용정지	운용정지	허가취소 또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	항제5호	1개월	2개월	폐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				
해한 경우				
9.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72조제2	허가 취소		
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	항제6호	또는 폐지		
선국을 운용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	법 제72조제2	허가 취소		
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	항제7호	또는 폐지		
용을 휴지한 경우 11.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은	법 제72조제2	허가 취소		
 경우	항제8호	또는 폐지		
1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			운용정지	허가 취소 또는
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	항제9호	3개월	6개월	폐지
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 - 운용한 경우				
1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	법 제72조제2	운용제한	운용제한	운용정지
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	항제10호	1개월	3개월	3개월
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				
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않				
은 경우				
14.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 법			운용정지	허가 취소 또는
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항	}제11호 │	3개월	6개월	폐지
을 지키지 않은 경우 15.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 법	ને ચો70૨ચો0	운용정지	허가 취소	
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항				
	3세12오 	6개월	또는 폐지	
을 한 경우 16.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 법] 제72조제2	운용정지	허가 취소	
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항			또는 폐지	
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		., _	_ , ,	
을 한 경우				
17.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법	· 제72조제2	운용제한	운용제한	운용정지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항	∤ 제14호	1개월	3개월	3개월
합하지 않은 경우		- ", "		,, _
18. 법 제47조를 위반하여법		운용제한	운용제한	운용정지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항	}제15호 	1개월	3개월	3개월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9.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 법	네 계70조계0	운용정지	운용정지	허가 취소 또는
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무항		고 등 경기 3개월	전 등 경기 6개월	폐지
	3세10모	3개월	O개별	페시
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				
대・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				
우 20.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 법]] 제72존제2	우용정지	운용정지	운용정지
하여 수수료를 내지 않은 항		10일	20일	30일
경우)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0 2	202	00 2
°' 21.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 법] 제72조제2	운용정지	운용정지	허가 취소 또는
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항		3개월	6개월	폐지
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	, ,, –	- " -	- 11 -	., ,
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22. 법 제70조제4항을 위반 법	· 제72조제2	운용정지	허가 취소	

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	항제19호	6개월	또는 폐지	
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23.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법 제72조제2	운용제한	운용제한	운용정지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	항제20호	1개월	3개월	3개월
치하지 않은 경우 24.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법 제72조제2	운용정지	운용정지	허가 취소 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항제20호	3개월	6개월	폐지
에 해당하는 자를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6] <개정 2017. 7. 26.> <u>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u>(제118조제5호 관련)

<u> </u>			<u> </u>	ユ カス
	근거	기반	첫구일 시1	5기 문 3차 이상
위반내용	법조문	1차 이상	2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76조	기술자격		
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제1항제1호	취소		
취득한 경우				
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	법 제76조	기술자격		
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	제1항제1호	취소		
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의2			
2.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	업무종사	업무종사	기술자격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제1항제2호	정지	정지	취소
운용한 경우		6개월	1년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종사	기술자격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제1항제3호	정지	정지	취소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6개월	1년	
4.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과학기	법 제76조	업무종사	업무종사	기술자격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	제1항제4호	정지	정지	취소
시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		6개월	1년	
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				
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운용한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버 계76ス	어므조시	어므조시	기술자격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			정지	기호시주 취소
	세1성세0모		σ ,	刊立
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1년	2년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	업무종사	업무종사	기술자격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	제1항제6호	정지	정지	취소
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6개월	1년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				
지 않은 경우				
7.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	업무종사	업무종사	기술자격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	제1항제7호	정지	정지	취소
지 않은 경우		6개월	1년	

8.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 우	법 제76조 제1항제8호	업무종사 정지 6개월	업무종사 정지 1년	기술자격 취소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통신 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8호	정지	업무종사 정지	기술자격 취소
10.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6개월 업무종사 정지	1년 업무종사 정지	기술자격 취소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1.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		1년 업무종사 정지	2년 업무종사 정지	기술자격 취소
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 사를 한 경우	711 8711UX	6기 1년	o^1 2년	111-42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7] <개정 2024. 7. 23.>

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

- 1.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기간' 1 개월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 1개월은 각각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기간'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 에 제4호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3. 제2호의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기간'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은 별표 25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 22의2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각각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
- 4.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과 '무 선국의 운용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무선국 운용정지 1일	무선국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제한 1일		
전기통신사업용무선국	167,000원	84,000원		
또는 방송국	107,00012	04,000건		
그 밖의 무선국	67,000원	34,000원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7의2] <신설 2024. 7. 23.>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과징금을 산출하는 경우 법 제58조의7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업무정지를 받은 지정분야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 다.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지정분야별 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5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가. "업무정지 일수"는 별표 24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분야의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
- 나. "연간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지정 등의 이유로 1년간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 순으로 연간 매출액을 산출・조정한다.
- 다. "기준경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 중 기술검사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말한다.
- 라.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기업 경영분석에 따른 가장 최근 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말한다.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8] <개정 2024. 7.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하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과태료

(단위: 만원, 1국)

		과태료 금액						
	근거	방송·전기통신사업 용 무선국			그 밖의 무선국			
위반행위	법조문	7	5 下他 	1		十包五	0.=1	
	日二七	1차	2차	3차 이상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90조	50	100	150	30	50	70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	제1호의2						
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 2)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2조	40	60	80	20	30	50
인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호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3)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법 제90조	100	150	200			
무선국을 법 제24조제1항을	제2호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							
고 운용하거나 법 제25조제3							
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4)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	150	200	300			
무선국을 검사받지 않고 운용	제89조의3						
하는 경우	제1호						
5)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90조	100	150	200	50	100	150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	제2호의2						
6)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법 제90조	100	150	200	50	100	150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	제3호						
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							
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7)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	법 제92조	40	60	80	20	30	50
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호			0			
8)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80	130	150	50	80	100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 비	제1호						
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9) 법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	법 제91조	50	100	150	40	80	100
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제2호	50	100	130	40	60	100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	세2모 법 제91조	50	100	150	30	50	70
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은	제3호	00	100	100	00	00	
경우	\\\\\\\\\\\\\\\\\\\\\\\\\\\\\\\\\\\\\\						
11) 법 제45조 및 제47조를 위	법 제91조	50	100	150	30	50	70
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호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							
지 않은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							

12)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	법 제91조	50	100	150			
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	제5호						
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							
13) 법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	법	150	200	300	100	150	200
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	제89조의3						
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	제2호						
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14)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	법 제90조	100	150	200	50	100	150
른 설비를 허가받지 않고 운	제5호						
용한 경우							
15) 법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	법 제91조	50	100	150	30	50	70
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	제6호						
나 공사를 한 경우	2000						
16)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100	150	200	50	100	150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제5호의10						
운용한 경우	NJ 300-	100	150	200		100	150
17) 법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	법 제90조	100	150	200	50	100	150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	제6호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나. 그 밖의 과태료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위 반 행위	근거	1차	2차	3차	
11 2 0 11	법조문	위반	위반	이상	
				위반	
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법 제92조	30	50	80	
않은 경우	제1호				
2)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법 제90조	100	200	300	
포함된 전파의 형식 · 점유주파수대역폭	제1호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					
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					
여 운용한 경우(제23조제4호에 따른 무선					

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 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법 제89조의2	500	750	1,000
경우 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3호	10	30	50
5) 법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법 제90조	100	200	300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4호			
6)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	법 제89조의3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	제3호			
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한 경우				
가. 판매·제조·수입업자		200	300	500
나. 가목 외의 자		경고	30	50
7)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	법 제90조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	제5호의2			
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				
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 · 방송통신망				
에 설치한 경우				
가. 판매・제조・수입업자		100	200	300
나. 가목 외의 자	H) -1100 -7	경고 100	20	30
8)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	법 제90조	100	200	300
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제5호의3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9) 법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법 제92조	50	70	100
를 하지 않은 경우	점 세 <i>92조</i> 제4호	50	70	100
글 아시 냥는 경구 10) 법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	네 ^{4오} 법 제92조	50	70	100
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제5호	00		100
공개하지 않은 경우	,,,,,,,,,,,,,,,,,,,,,,,,,,,,,,,,,,,,,,,			
11) 법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58	법 제92조	50	70	100
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제6호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				
하지 않고 판매・대여한 경우나 판매・대				
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				
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12) 법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58	법 제90조	100	200	300
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	제5호의4			
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대여한 경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				
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13)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법 제92조	50	70	100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7호			
14)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	법 제90조	100	200	300
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5호의5			
15) 법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	법 제90조	100	200	300
(법 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제5호의6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				
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6)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90조	100	200	300
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5호의7			
17)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	법 제90조	100	200	300
지 않은 경우	제5호의8			
18)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	법 제90조	100	200	300
행하지 않은 경우	제5호의9			
19) 법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법 제91조	50	100	150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	제7호			
나 그 공사를 한 경우				